

#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제592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1. 29  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사유

○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도모

## 2. 주요골자

-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
- 기금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
- 기금지급은 년2회(상·하반기 각1회)
- 기금지급 인원 및 금액은 27명 10,000,000원

## 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제35조, 같은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
-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 제7조

## 4. 본문 : 붙임과 같음

# 2000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

## 1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제35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  - 기금의 설치·운용
- 지방재정법제110조(기금의 운용 등)
  -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.
  -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.
- 지방자치법제118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  -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.
  - 시·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.
-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제7조(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)
  - 사업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설치 운영
  - 기금은 고성군의 일반회계출연금, 기탁금, 기타수입으로 조성하되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(목표액 1억원 기달성).
  -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.

## 2. 2000년도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

- 2000년도 기금조성계획 ----- 140,354,550원
  - 기초성액('99.12.31현재) : 131,998,300원
    - 적립원금 : 110,000,000원
    - 적립원금이자 : 5,633,060원
    - 이자(기금운용)예탁금 : 16,365,240원
  - 2000년 이자수입 : 8,356,250원
- 2000년도 기금사용계획 ----- 10,000,000원
  - 장학생선발 : 27명
  - 장학금지급 : 10,000,000원(5,000,000원 X 상·하반기 각1회)
    - 특별장학금 : 5명 2,400,000원
    - 일반장학금 : 22명 7,600,000원
- 2000년말 조성예상액 ----- 130,354,550원